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5320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2179호로 마친 2번B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유한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73690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6. “B은 C 유한회사에게 57,757,564원 및 그 중 16,246,882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3.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26. C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9. 5. 3.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1. 6. 13. 기준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67,910,360원이다.

라. B은 2020.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3. 9.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누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피고와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곡성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 유한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7369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도통지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C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무자인 B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가 B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유한회사가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C 유한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를 B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B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위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B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21. 11. 22. B를 소송대리할 사람으로 지정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21. 11. 25.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B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한 사실, 원고는 2021. 11. 25.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양도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서의 현출은 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적어도 2021. 11. 25.경에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섣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별지

1)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및 채권양도 흠결로 인하여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소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